

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. 11. 27 선고 2024가합10174 판결 [공사대금(선급금 등)반환청구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서

피고1. 주식회사 B

2. C

3. D

변론 종결2024. 11. 13.

판결 선고2024. 11. 27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D는 공동하여 419,369,000원 및 그 중 283,369,000원에 대하여는 2023. 11. 4.부터, 136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23. 12. 23.부터 각 2024. 9. 7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

나.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, 피고 D와 공동하여 위 419,369,000원 중 157,169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11. 4.부터 2024. 5. 29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

각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및 '변경할 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가. 피고 D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주식회사 B, 피고 C

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)

재판장판사이현우

판사김규현

판사강수민

별지

1) 청구취지 제1의 가항의 '소장 부분 송달일'은 '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'로 선택한다.